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종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(안 제2조)
-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조정(안 제21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였으며
-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